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2-09

부 산 고 등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0누22190 지방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고, 피항소인	[redacted]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redacted]
	담당변호사 [redacted]
피고, 항소인	[redacted]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redacted]
제 1 심 판 결	[redacted]법원 2020. 7. 16. 선고 2019구합6752 판결
변 론 종 결	2020. 11. 13.
판 결 선 고	2020. 12. 18.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2-09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7.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지방세 5,899,8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도로의 설치·관리와 그 밖에 이에 관련된 사업을 함으로써 도로의 정비를 촉진하고 도로교통의 발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법인으로서, 양산시 동면 석산리 1054-4, 같은 리 1086, 같은 리 1088, 같은 리 1389-5 각 지상 별지 1 건축물의 목록 기재 건축물(합하여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7. 7. 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축물에 관한 재산세 4,035,750원, 지역자원시설세 1,346,670원, 지방교육세 517,400원 합계 5,899,820원의 지방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9. 28.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7. 12. 22. 기각결정을 받았고, 2018. 3. 1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4. 26.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2-09

가. 원고의 주장

'도로의 부속물'은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1호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9. 12. 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도로법에 따른 도로'로서 비과세대상에 해당되고, '도로의 부속물'에는 해당 시설과 그 부지 및 해당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부대시설과 그 부지도 포함되는바, 이 사건 건축물은 모두 도로법에서 정한 도로의 부속물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건축물은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1호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지방세 비과세대상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피고의 주장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에서는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에 따라 재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재산으로 '토지'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이 사건 건축물은 재산세 부과대상이라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다.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라. 판단

1) 이 사건 건축물이 도로의 부속물인지 여부

도로법 제2조 제1호는 '도로'란 '차도, 보도, 자전거도로, 측도,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구성된 것으로서 제10조에 열거된 것을 말하며,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도로법 제2조 제2호는 '도로의 부속물'이란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편리한 이용과 안전 및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 그 밖에 도로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라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2-09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이 사건 처분의 경위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redacted]지사는 전체적으로 모든 업무파트가 도로 및 그에 부수된 시설 등의 유지 · 보수 및 관리업무를 유기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건축물 중 제1동은 원고 [redacted]지사 사무실로, 제2동은 정비고, 창고 및 주차장으로, 제3동은 차고지로, 제5동은 경비실로, 제6동은 주유시설로, 제7동은 분뇨처리시설로, 제8동은 월동자재창고, 폐토사 적치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건축물은 모두 원고 [redacted]지사의 사무실 또는 시설로 사용되거나 원고 [redacted]지사의 사무소 유지에 필수적인 시설로서 도로법 제2조 제2호 및 도로법 시행령 제3조의 '도로관리사업소 등 도로관리시설'(제1, 5, 7동), '도로의 유지 · 관리용 재료적치장'(제2, 8동), '주차장 등 도로이용 지원시설'(제3동), '주유소'(제6동)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축물은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편리한 이용과 안전 및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 그 밖에 도로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시설 및 공작물'로서 도로법 제2조 제2호의 '도로의 부속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이 사건 건축물이 구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른 비과세대상인지 여부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1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를 재산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는 '법 제109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란 도로법에 따른 도로 등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지방세법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의 규정 형식 및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2-09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건축물이 '도로의 부속물'로서 도로법에 따른 도로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1호 및 구 지방세법 제10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가) 지방세법 제105조는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을 각각 과세대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과세대상별로 과세표준, 세율, 납기 등을 달리 규율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04조는 과세대상인 '토지'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로, 과세대상인 '건축물'을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 · 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로 정의하여 과세대상으로서의 '토지'와 '건축물'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다.

나)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1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를 비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고, 위 조항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이란 지방세법 시행령을 의미하는데,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조항에 따라 비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은 "토지"에 한정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도로법 제2조에 따른 도로 또는 도로의 부속물을 구성하는 시설의 경우에도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에 따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토지 및 건축물을 별도로 파악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건축물의 경우 지방세법 제104조 제1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에 따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2-09

보기 어렵다.

다) 원고는,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5두49658 판결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도로법 제2조에서 정한 '도로의 부속물'은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1호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도로법에 따른 도로'로서 비과세대상에 해당하고, '도로의 부속물'에는 해당 시설과 그 부지가 포함되며 또한 해당 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부대시설 및 그 부지도 포함되므로, 이 사건 건축물 역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시하는 판결은 도로의 부속물인 건축물의 '부지' 및 도로의 부속물의 이용에 제공된 '토지'가 도로의 부속물로서 구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른 비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한 사안으로, 도로의 부속물인 건축물 자체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에 따른 비과세대상인지 여부가 쟁점인 이 사안과는 사실관계를 달리한다.

라) 2019. 12. 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이하 '개정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는 비과세대상인 도로에서 '도로의 부속물 중 도로관리시설, 휴게시설, 주유소, 충전소, 교통·관광안내소 및 도로에 연접하여 설치한 연구시설'을 제외하였고, 이와 같이 개정된 시행령의 개정이유가 '재산세 비과세대상인 도로의 범위에서 도로의 부속물 중 도로관리시설, 휴게시설, 주유소, 충전소, 교통·관광안내소 등을 제외함'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5두49658 판결, 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1두17165 판결 등 다수의 판례에 의하여 종전에 도로의 부속물에 포함된다고 해석되어 온 '위 시설 등의 부지' 및 '그 이용에 제공된 토지'를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의미일 뿐, 위 개정 시행령 조항의 반대해석으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에 따른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건축물'이 포함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2-09

되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건축물은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1호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2-09

별지 1

건축물의 목록

순번	2017년도 7월 일반건축물(2017년도분) 정기과세 내역서			일반건축물대장				현황
	동명	호수	면적(㎡)	구분	층별	용도	면적(㎡)	
1	1동	101호	1,042.64	주1	1층	업무시설	1,042.64	[redacted]지사 사무실 (교통상황실 포함)
2	〃	201호	495.92	〃	2층	업무시설	495.92	〃
3	〃	지하1층 8101호	506.83	〃	지하1층	기계실, 지하대피소	506.83	〃
4	2동	101호	810.2	주2	1층	창고, 자동차관련 시설	810.2	정비고
5	〃	102호	55.58	〃	〃	창고	55.58	창고
6	〃	지하1층 8101호	34.2	〃	지하1층	보일러실	34.2	정비고
7	3동	101호	575.5	주3	1층	자동차관련 시설	575.5	차고
8	5동	101호	39.53	주4	1층	업무시설	39.53	경비실
9	6동	101호	10	주5	1층	위험물저장소	10	주유시설
10	7동	101호	7.92	주6	1층	분뇨처리시설	7.92	분뇨처리시설
11	8동	101호	300	주7	1층	창고시설	300	월동자재 창고
12	〃	102호	90	주8	1층	창고시설	90	폐토사 적치장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2-09

별지 2

관계 법령

■ 지방세법

제109조(비과세)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산(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제3호 및 제5호의 재산은 제외한다)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 및 묘지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9. 12. 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비과세)

① 법 제109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 및 묘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도로 : 「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는 제외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비과세)

① 법 제109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 및 묘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도로 : 「도로법」에 따른 도로(같은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도로관리시설, 휴게시설, 주유소, 충전소, 교통·관광안내소 및 도로에 연접하여 설치한 연구시설은 제외한다)와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는 제외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2-09

■ 도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차도, 보도(보도), 자전거도로, 측도(측도),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구성된 것으로서 제10조에 열거된 것을 말하며,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2. "도로의 부속물"이란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편리한 이용과 안전 및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 그 밖에 도로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가. 주차장, 버스정류시설, 휴게시설 등 도로이용 지원시설

나. 시선유도표지, 중앙분리대, 과속방지시설 등 도로안전시설

다. 통행료 징수시설, 도로관제시설, 도로관리사업소 등 도로관리시설

라. 도로표지 및 교통량 측정시설 등 교통관리시설

마. 낙석방지시설, 제설시설, 식수대 등 도로에서의 재해 예방 및 구조 활동, 도로환경의 개선·유지 등을 위한 도로부대시설

바. 그 밖에 도로의 기능 유지 등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구 도로법 시행령(2013. 12. 30. 대통령령 제250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도로의 부속물)

법 제2조 제2호 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법 제23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하 "도로관리청"이라 한다)이 설치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주유소, 충전소, 교통·관광안내소, 졸음쉼터 및 대기소
2. 환승시설 및 환승센터
3. 장애물 표적표지, 시선유도봉 등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기 위한 시설
4. 방호울타리, 충격흡수시설, 가로등, 교통섬, 도로반사경, 미끄럼방지시설, 긴급제동시설 및 도로의 유지·관리용 재료적치장
5. 화물 적재량 측정을 위한 과적차량 검문소 등의 차량단속시설
6. 도로에 관한 정보 수집 및 제공 장치, 기상 관측 장치, 긴급 연락 및 도로의 유지·관리를 위한 통신시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2-09

7. 도로 상의 방파시설(방파시설), 방설시설(방설시설), 방풍시설(방풍시설) 또는 방음시설(방음림을 포함한다)
8. 도로에의 토사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및 비점오염저감시설(「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을 말한다)
9. 도로원표(도로원표), 수선 담당 구역표 및 도로경계표
10. 공동구
11. 도로 관련 기술개발 및 품질 향상을 위하여 도로에 연접(연접)하여 설치한 연구시설. 끝.